

# 다같은 인간이다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족법은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 가족법을 고쳐야만 하는 이유

인간평등의 이념은 우리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온 공동의 신념입니다. 그러기에 개국과 함께 우리 헌법 제 10 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34조는 또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족법은 남녀가 불평등한 봉건 윤리에 젖어 있어 법이 앞장서서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딸을 천대하며 남편만 중히 여기고 아내는 하찮게 여기는가 하면 시집은 우대하고 친정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률이 스스로의 몰매함을 바로 잡지 못한 채 오늘에까지 이른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국가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불평등을 강요하고 지배복종의 비민주적 사고를 조장하는 현행 가족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의식과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여성의 인간성 회복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양식회복을 위해서도 가족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984년 8월 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이 태 영



## 이런 호주제도는 고쳐야...

호주는 가족을 강제로 분가시킬 수 있고 재산상속에서 특전을 누리기도 하는 동시에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 호적에 들어 오거나 나갈 때에는 호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호주제도는 원래 한 집안에 몇대가 모여살던 시절 대가족을 통솔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핵가족으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이, 맏아들이 사망하면 맏손자는 나이가 많건 적건, 능력이 있건 없건 또는 본인이 원하건 원치 않건 무조건 호주가 됩니다.

장남, 장손만을 제일로 치는 이러한 호주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 친권은 부모중 적당한 사람에게

친권이란 어린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며 자녀의 살 곳을 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에서는 자녀문제에 부모의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는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더라도 친권자가 될 길이 없습니다. 또 이혼한 후 아버지가 죽으면 계모가 친권자가 될지언정 생모는 되지 못합니다.

친권은 부모 중에서 자녀를 위해서 적당한 사람쪽에 줄 수 있도록 고쳐야 합니다.



## 동성동본도 촌수가 멀면 결혼할 수 있게

법은 단지 아버지의 성과 본만 같으면 촌수조차 헤아릴 수 없는 남남끼리도 혼인을 못하게 합니다.

근친혼을 막는다면 어머니 쪽은 가깝진 멀진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쪽 피만 따져 혼인을 금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생학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으면서 혼인하려는 남녀를 괴롭히고 출생한 자녀들까지 사생아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촌수를 정해서 근친혼을 막되 그 이상은 혼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합니다.



## 친족은 남녀 다 같게

법에서는 아버지 쪽은 8촌, 어머니 쪽은 4촌 까지가 친족입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는 시아버지의 8촌, 시어머니의 4촌까지가 친족인데 남편에겐 장인, 장모만 친족일 뿐 처남, 처제도 남남입니다.

친족은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 시집 쪽이나, 처가쪽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정해야 합니다.



## 서자입적에는 아내의 동의를 얻도록

법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아내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 호적에 올려 놓고 아내에게 아이에 대한 부양·상속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강요하게 합니다.

이것은 일부일처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서자입적에는 반드시 아내의 동의를 얻게 해야 합니다.

## 양자 가고 들이고는 부부 뜻이 맞아야

남편은 아내가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의견을 밝힐 수 없을 때에는 부부가 양자로 가거나 들이는 것을 혼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렇게 못합니다.

부부는 반드시 서로의 의견이 맞아야 입양문제를 정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합니다.

또 양자로 가도 본래의 성과 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왕 자식으로 들일 바에는 성과 본도 양 부모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 이혼할 때는 재산을 나눌 수 있게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누구의 이름으로 돼있느냐에 상관하지 말고 이혼을 할 때라면 서로 나뉘어 가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아내에 대한 상속세는 면제해야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상속받는 재산은 진정한 의미에서 상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과는 달리 자기 몫의 재산을 찾는 것이니까 세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이렇게 나눠 가진 몫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 시집간 딸에게도 상속몫을 같게

출가한 딸은 다른 형제자매에 비해 재산 상속의 몫을 1/4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혼인해서 분가했다라도 그 몫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생각이 법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이든 딸이든, 혼인을 했건 안했건 자식은 누구나 똑같이 상속을 받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 친정부모에도 동등한 상속권을

자녀없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딸의 재산은 친정부모에게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사위가 전 재산을 혼자 상속합니다.

그러나 자녀없이 사망한 아들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와 함께 상속합니다.

자녀없이 사망한 아들의 재산을 며느리와 공동으로 상속받듯이 자녀없이 사망한 딸의 재산도 친정부모가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은 뒤집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로 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